



IMO, 노후선박 해체관련 신조약 골격에 합의 제53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의무사항 등 선박해체 시설의 승인 기준, 승인주체는 검토

노후선박의 해체와 관련한 새로운 조약이 오는 2008년이나 2009년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7월29일 개최된 제53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해체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한 결과, 유해물질 리스트 작성 등 새로운 조약의 골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조약의 골격은 선박 건조시의 유해물질 리스트 작성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선박의 설계, 건조, 운항, 유지관리, 해체준비 △선박해체 시설에 관한 규제 △앞에 열거한 두항목의 실시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 등이다.

신조선의 사용을 금지하는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다른 국제조약으로 규제되는 물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할 때에는 전문가 그룹에서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선소에서는 위험물질리스트의 작성, 운항선사에서는 동리스트의 개선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선박해체 준비단계에서는 최신판의 리스트를 해체시설에 제출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존 선박에 대해서는 위험물질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마련한 다음에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동리스트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IMO는 또 이러한 규정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증서와 통보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선박해체에 대한 신조약은 골격은 어느정도 마련됐지만, 시행상 필요한 조항 등 구체적인 사항

을 구비하는데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조선으로의 사용금지 물질은 SOLAS, MARPOL, 스톡홀름, AFS의 각 조약과 몬트리올 의정서를 참고로 하지만, 이것을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현존 선박의 경과조치 등도 동리스트의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과 병행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선박해체 시설의 승인 기준, 승인 주체도 검토해야 한다.

금번 열린 제53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신조약을 2008~2009년에 채택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총회 결의안을 작성승인, 오는 11월에 열리는 IMO 총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조약 제정을 위한 스케줄을 확정했다.

선박해체와 관련하여 바젤조약측은 종전부터 통보시스템을 중시한 제도설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IMO는 이에 대해 “통보시스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투명성의 확보와 다른 강제 요건의 실시·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조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젤조약측은 선박의 기국이 해체국에 통보·승인을 얻는 등 편의지적(FOC) 선주체제의 현행 국제해운의 실태에 맞지 않은 규제를 구상, IMO 측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IMO의 새로운 조약의 공격을 보면, 선박의 설계·건조시 신조선에 있어서의 유해물질의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다른 조약으로 규제되고 있는 물질이 기본이며, 추가하는 경우는 신중하게